

조례

# 기안용지

분류기호		-468		(전화번호)	
법제	법령	법규	관	제1부처장	시 관
행정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법제	법령	법규	법규	법규	법규
제	목	서울특별시	관	제1부처장	시 관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제정	모자	관	제1부처장	시 관	국무총리

원본대조필

인안내무국서민과보편



(공 포 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설치  
요청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 리 식

197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621 호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불량건물(무허가건  
물)일소와 위성도시건설의 일환으로 대단지(주거지)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사업소(이하사업소라한다)  
를 둔다.

제 2 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포한다.

제 3 조 (직무) 사업소는 다음의 직무를 관장한다.

- 가.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나. 주택단지조성 계획 및 공사
- 다. 철거민에 대한 대책
- 라. 구호된 농민에 대한 협조
- 마.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

제 4 조 (공무원)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3급직류인 일  
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0009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조직) 사업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두되 그 조직과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 목 제 정 사, 유

1. 서울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불쌍주력(우허가결물)을 정리하고  
법구분산책의 일환으로 주력경영사업실시계획명가(68.5.7 건설  
부고시계286호)를 일어 대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바
2. 사업계획의 중요성 및 광대성(중보구면적과비동함)과 타자치단  
체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협외동  
기능수행이 단순한 사업실행만에 한정되는 사람이 아님으로
3. 본사업우권을 전담관장할 사업소를 조대로 설치코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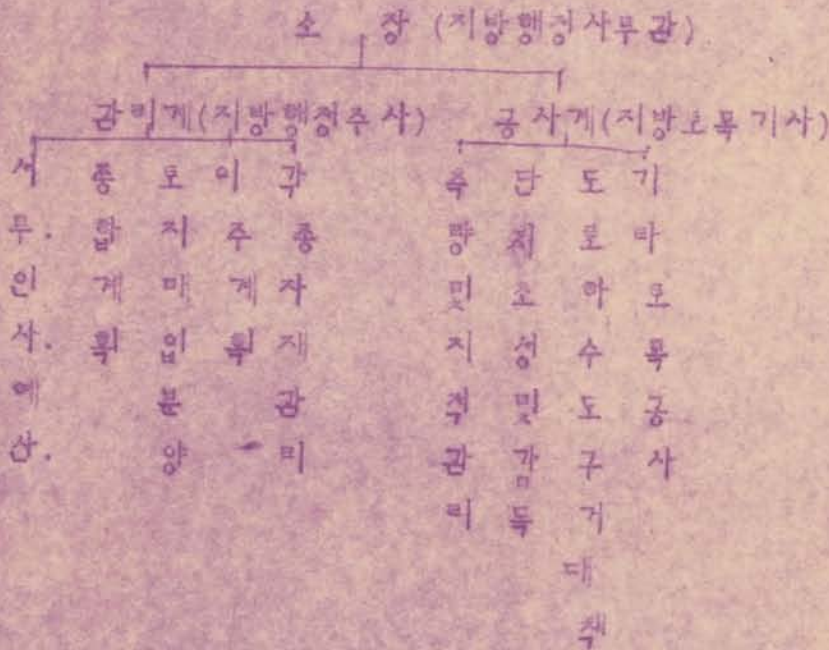
0011



## 대단지사업소 기구강화

### 1. 현황

1. 서울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불량건물)을 정리하고
2. 경기도 중부권에 대단지(주택지) 경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단지사업소 설치(1969. 9. 1시공취제834호)
3. 사업계획
  - 가. 단지조성 계획 300만명 (종로구 52만명)
  - 나. 수용인원 326,000명 (용산구 304,533명) 69. 12. 31현재
  - 다. 수용동수 55,650동
4. 현행기구



### 2. 검토

1.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대단지조성의 기본인 용지매입이 당초 계획의 30%로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다. 주민 자활 대책

신개발 지역으로서 일정한 일터가 없음

(노동력 수요가 많은 공장시설의 유치가 필요함)

마. 전기 시설 미비

현재 단지 입구인 테조면까지 외선공사를 완료했음.

### 3. 결론

1. 인력과 기능을 보강 강화 사업추진을 효율화
2. 소장 주급을 인상 자치 단체 상호간의 협조 기능을 원활화
3. 사업소 설치근거를 조례에 투모록 설치 조례 제정



년도별	매입계획	매입실적	비	고
1968	500,000명	441,500명		
1969	1,000,000	536,000		
1970	1,500,000	52,373		
계	3,000,000	1,029,837		

2. 전지사업 추진상황은 용지 매입의 지연에도 기인되었으나 이 역시 부진한 실정에 있음

년도별	정지계획	정지실적	입 주 현 황	
			세대수	인구수
1969	700,000명	243,260명	3,301	17,127
1970	1,000,000	115,900	1,528	8,000
1971	1,300,000	/	/	/
계	3,000,000	359,160	4,829	25,127

3. 대단지사업소는 라 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서 자치단체상호간의 행정협의 문제가 복잡하고

4. 시정으로 부커 용거리 (약 32km)에 있음으로서 업무연락의 신속을 기할수 없음

5. 노한 사업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기구의 재정비 강화가 필요할것임.

가. 주민공수문제

현재 저토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수생산시설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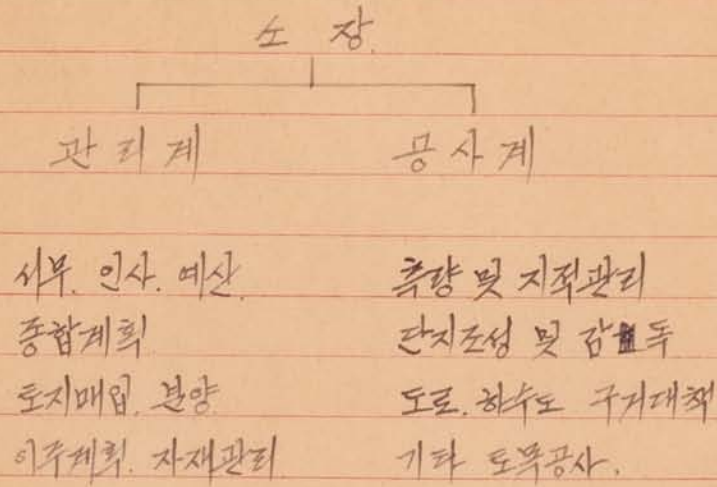
(4,000 톤 급수시설 설계중 8월말 준공 예정)

나. 교통문제

현재 9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정주민의 증가로 증차 조치가 필요함.

四 기구개편안

1. 현행기구



2. 개편안

